

Australia의 가축위생상황(上)

김 병 구*

Australia의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CSIRO) 중, 가축위생연구기관에는 Animal Health Lab., Australian National Animal Lab., McMaster Lab., Pastoral Lab., Long pocket Lab.,의 5개 연구소가 있다. 이들 연구소의 조사 연구 연보(1977년)에서 중요한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Bluetongue disease

1977년 3월 27일~30일에 채취한 *Culicoides Variipennis*에서 CSIRO, 19가 분리된 이래 대규모로 조사연구가 실시되었다. 조사는 500개소 이상에서 만레이상의 혈청에 대하여 micro-titer에 의한 중화시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양성례는 북 Australia Northern Territory 북부와 기타우, 수우, 산양서에만 볼 수가 있었으나 증상례는 볼 수가 없었다. 면양의 점종시험에서는 제2, 제3대의 계대에서 가벼운 발증을 보였으나 회복은 빨랐다. 면양과 소에서는 Viremia가 증명이 되고 혈중내의 존재는 최근 22일 이라고 보고있다.

우유행열

우유행열은 1977년 봄철에 발생이 있었고 항체는 북 Australia에서 볼 수가 있었다. 분리된 virus(2株) 면역교차 시험에서 항원적인 상의 점은 인정할 수가 있었다.

Akabane disease

1950년대 부터 소, 면양에서 이상 자양 생산의 발생이 있었으나 Akabane disease의 관여는

1975년 이후 확인하게 되었다. 16개지역소에 대하여 매월에 실시한 결과에서 virus의 동행은 1977년 1~3월에가서 볼 수가 있었다.

Camben의 예에서는 곤충이 아직 적은 시기에 단기간내의 항체상승이 있고 3월13일에 소의 50%가 양성이었다는 것이 3월 21일에는 거의 100%가 양성으로 되었다. 이 예에서는 virus가 분리되고 있지 않다. 소정액중의 virus 검색을 인공감염우 8두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 정자의 이상도 없었고 virus도 분리되지 않았다.

닭 병

1976년에 시판 鷄病 vaccine으로 관련된 RE-V에 의한 사고가 발생되고 이와 관련된 조사가 실시 되었다.

Australia의 국립가축위생연구소와 해외질병 방역

Australia 제 1 차 산업성 가축위생국의 국립 가축위생연구소와 해외질병 예방이란 제목의 보고서 내용의 개요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소는 호주 Geelong에 1983년에 신설된 호주 유일의 가축위생 연구소이다. Australia는 현재 많은 중요질병에 대하여 청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이는 곧 생산자와 관련산업에 크나 큰 경제적이익을 가져오게 된다.

Australia는 축산업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축의 생산, 축산물 수출은 경제적인 면에서 비중이 매우 크다. 해외질병에 대하여 청정상태가 유지되고 있는것은 정부, 생산자, 가축위생관계 연구자, 삼자의 오랜 전통적

*국립동물검역소

인 협력관계에 의한 것이다. Australia는 과거에 수차에 걸쳐 해외질병이 침입된 때가 있다. 즉 1858년에 우폐역이 침입하였을 때에는 수의사의 권고가 무시되었기 때문에 국내에 만연되었다. 1872년에는 구제역, 1922년에는 우역이 침입되었으나 정부의 원조에 힘입어 박멸에 성공하였다. 이를 계기로 연방가축위생당국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1950년대에는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CSIRO)와 각 대학의 연구진이 정부에 활동을 하기 시작하여 반추류의 동물 수입이 금지되었다. 1960년대에 와서는 해외질병 긴급방역 program에 관계되는 진단시설의 정비와 연방, 주정부간의 협력체계의 확립이 추진되었다. 1970년대에 와서 안전한 진단시설의 설치 결정은 보았지만 재정적인 이유로 건설이 지연되었다. 그 후 1977년에 Bluetongue virus가 발견되고서 부터 정부는 국립가축위생연구소의 건설을 허가하게 되었다.

I. 해외질병 대책

1) 방역 programme: 방역 programme의 기본적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충분히 검토가 되어 찬동을 얻은 명확한 계획.
- 생산자의 이해와 협력.
- 방역활동을 실시하기 위한 훈련받은 인원.
- 진단, vaccine 제조를 위한 인적 물리적인 정비.
- 살처분을 위한 보상과 방역재원 등이다.

해외질병에 대처하기 위한 검역은 지속적인 추진이 따르지 못하면 안되지만 검역 만으로서는 불충분하다. 주와 연방정부는 주요 해외질병에 대한 방역계획을 책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각 질병의 독자적인 문제는 있지만 방역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오염된 가축의 살처분
- 농장의 소독
- 동물, 사람, 물품의 이동규제
- 곤충과 야생동물에 대한 대책
- 예방주사
- 정보연락 system의 활동
- 국민의 협력

방역, 박멸활동에 있어서 해외질병의 조기발견

과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 조기발견을 위하여는 수의사는 물론이지만 특히 축주가 해외 질병에 대한 지식을 가져 불명한 질병의 발생이 즉각적으로 통보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조기발견에 의하여 검사, 살처분, 소독도 정확하게 실시가 되고 박멸도 신속하게 수행이 되지만 발견이 지연되어 야생동물과 곤충 vector에 질병이 확산되면 방역과 박멸시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해외질병 발생이 의심될 때에는 주의 주임수의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검사와 자료채취 등의 지시

● 연방가축위생 국장에게 호주농업 심의회의 해외질병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연락을 한다. 자문위원회는 해외질병을 결정하고 긴급대책을 발동한다. 방역활동의 내용은 발생된 질병에 따라서 다르나 다음 4개항의 기본적인 방법중에서 몇가지가 적용이 된다.

● 살처분

● 예방주사

● 치료에 의한 방역

● 가축의 건강과 경제성에 크게 위협이 되지 않는 해외질병에 대하여는 박멸조치를 강구하지 않는다.

2) 살처분

구제역, 우역, New castle disease, Swine cholera,가금 pest가 침입되었을 때에는 이 조치가 강구되고, 금후 이들 질병이 재침입될 때에도 살처분이 실시된다. 살처분과 병행하여 적발 검사, 야외에서의 surveillance, 소독, 감수성동물과 오염우려가 있는 생산물의 이동규제가 실시된다. 살처분은 위원회의 결정후 즉시 실시된다. 이 결정에 따라서 주당국은 실험실내 진단을 기다림 없이 환축과 의환축의 살처분을 지시할 수가 있다. 또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수귀로 이내를 오염지역으로 지정하고 가축의 이동금지를 실시하고 그 주변지역 또는 주전체를 방역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한 허가를 받은 것 이외의 가축은 이동이 금지된다. 긴급시의 계획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시되고 위생국은 필요에 따라서 방역용자재의 공급과 재정적 원조를 하게 되며 또한 국방성의 자연재해국은 차량과 자재를 공급한다.

3) 예방주사

Enterotoxemia (pulpy kidney) 전염성 과사성 간염(black disease) 등 많은 질병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예방주사가 실시되고 있다. 기타 양의 footrot과 같이 발생이 많고 타의 방역 조치로서는 많은 비용이 드는 질병에 대하여는 vaccine의 개발과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 1940년대부터 Brucellosis에 대한 Br. strain 19 등의 vaccine에 의한 예방주사에 의하여 Brucellosis 발생은 감소되고 현재는 적발도태하는 방식에 의한 박멸계획은 최종단계에 이르고 있다.

광견병방역에 있어서도 예방주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동규제와 검사와 예방주사가 동시에 조직적인 실행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박멸이 되고 타지역에서는 개에 의한 발생이 감소되어 가고 있다. 예방주사는 살처분에 의한 박멸이 곤란한 곤충매개 virus성 질병에 실시하게 될 것이다. vaccination programe는 질병의 만연상황에 적용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한 장소의 발생지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만연되는 상황에서는 주변에 예방주사를 실시하고 광범위하게 많은 중심 성격으로 발생할 때에는 전면 예방주사(blanket vaccination)가 적용된다. 예방주사에 의하여 만연속도를 억제하고 살처분조치가 적절하게 실시되게 된다. 예방주사를 받은 동물전체를 살처분한 후가 아니면 청정국으로서 인정이 안될때가 있는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예방주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축산업이 피멸에 이르는 상황과 같은 중대한 때에는 예방접종을 결정 실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구제역과 같은 중요 해외질병에 대한 박멸책으로서는 살처분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예방주사는 중요한 것이나 이차적 예방조치로서 선택되어야 한다.

4) 치료에 의한 방역

이 방법은 1977년 말의 전염성 자궁염이 처음 발생때 적용되었다. 이 질병은 교배에 의하여 만연한다는 것이 분명하여졌고 야외검사에 의하여 보균말이 적발되어 보균말은 투약과 외과조치에 의하여 치료되었다.

5) 질병과 공존

1976년에 처음으로 발생이 확인된 말의 Babesia증은 증상이 가볍든가 불현성감염증이기 때문에 박멸할 필요가 없었다고 한다.

6) 재정조치

주요한 해외질병에 대한 대책을 위한 연방 및 주정부의 재정조치는 양해가 되어있다. 경제적인 피해가 큰 특정한 질병을 박멸하기 위하여 살처분되는 동물과 처분된 물건의 소유자에게는 보상금이 주어진다. 이로 인하여 축주는 안심하고 질병의 발생을 통보하게 되고 해외질병의 조기적인 발견과 신속한 방역조치에 크게 도움이 되고있다. 주규칙으로 동물과 물건에 대하여는 시장가격으로 보상하게 되어 있으나, 처분에 수반되는 손실은 포함하지 않는다. 해외질병의 방역은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경비는 연방 및 주정부가 부담을 한다. 그 내용은 특정 질병을 박멸하기 위한 경비의 1/2은 연방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1/2은 각주의 사양가축 두수에 따라서 주정부가 부담을 하게된다.

7) 예방계획에 책정되어 있는 질병

구제역, 돈수포병, 수포성구염, 수포진, Bluetongue, 우역, Swine Cholera, African swine fever, 광견병, Newcastle disease, 가금 pest (이상 질병에 대한 방역경비는 연방과 주정부간에 분담이 합의되어 있다). African horse sickness, virus성 마뇌척수염, Screm-worm fly Lumpy skin disease.

2. 호주가축위생연구소의 역할

1) 목적

- 해외질병 발생시의 진단, 방역, 박멸체제의 확립
- 가축수입의 안전성 확보
- 가축 및 축산물의 수출촉진

2) 진단

해외질병에 대하여는 신속하고도 정확한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 질병의 교두보를 구축하기 전에 진단이 되면 해외질병과의 싸움에서 반은 승리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할 수가 있다. 반면 가축과 야생동물이 보균자가 될때까지 적발되지 못하면 이때에는 박멸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최초의 진단은 신속 정확하고 더욱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특히 진단이 음성일때가 중요한데 수입국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병원체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서 적절한 방역 program과 vaccine이 선택된다. 또한

유행의 범위와 방역 program의 효과평가 때문에 다수의 검사를 실시하고 다시 청정국이 되었다고 증명을 하여야 한다. 새로운 질병에 대하여는 호주의 많은 동물에 대한 영향을 검사할 필요가 있으나 안정성의 이유로써 지금까지는 해외연구소의 협력을 얻기로 되어있다. 그러나 해외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하는 체제로서는 검사가 지연되고 마는 결점이 있다. 영국의 Pirbright 연구소마저 다수예의 구제역의 검사는 신속한 검사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호주에 신설되는 가축위생연구소의 주요한 역할은 실험실내 진단으로서 해외연구소의 전문적인 기술을 인계받게 된다고 한다.

3) 연수

호주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악성 전염병 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해외질병을 잘 알고 있는 수의사가 적다. 훈련으로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은 해외질병이 발생할 때에 현지시찰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수의사를 해외에 파견하여 구제역, Newcastle disease, African swine fever 등의 발생사례를 시찰시키고 있다. 강의와 시청각기재에 의한 연수에서는 불충분하고 생재료 사용상의 안정성 문제는 가축위생연구소의 시설로서 해결될 것이다. plum island animal disease center에서 같은 목적으로 현재까지 200명 이상 수의사의 연수를 실시하였다. 해외질병으로 의심이 되는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최초로 검사재료를 송부하는 각주의 진단 연구소 직원에 대한 연수이다.

4) Vaccine

Rift valley fever, 광견병, Newcastle disease, Bluetongue, African horse sickness 등의 해외질병에 대한 방역과 박멸방책 으로서는 예방주사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안전하고도 효과적인 vaccine을 신속하게 해외에서 공급하는데는 문제가 있다. 예컨대 Sidney, Melburune과 같은 도시에 광견병이라든지 보로일러의 집중 생산지에 Newcastle disease라든가 또는 모기의 활동기에 하천연안에 Rift valley fever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방역을 위한 다량의 vaccine이 수일내에 준비가 되지 못하면 안된다. vaccine 제조소가 감소되어 가고 있고 또한 즉시 공급이 되는 것이 아니

며 더욱이 구가에 따라서는 vaccine 자체가 타의 해외질병에 오염되고 있는 두려움도 있다. vaccine개발에는 시간이 요하는 것으로 연방혈청 연구소에 있어서도 Bluetongue의 vaccine제조에 수년을 보내고 있으나 아직 완성을 보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해외질병이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vaccine 개발연구를 추진하여야 한다.

5) 연구

가축위생연구소에서는 CSIRO(연방과학 연구기구), 주농무성, 대학 등의 협력하에 유행병의 연구가 실시되기 때문에 많은 해외질병의 병원체가 보존되어야 할 것이다. 구제역과 같이 오래전부터 해외에서 연구가 진전되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가 아니고 호주로서 중요한 해외질병에 대하여 방역과 진단방법 향상에 역점을 두고 있다.

6) 가축의 수출입

가축위생연구소의 협력과 코코스섬의 검역소 설치에 의하여 호주는 세계중 어디에서나 우량한 가축을 도입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검역소를 거쳐 현재까지 북미에서 많은 소가 수입되었으나 이때에 해외연구소의 검사를 신뢰하는 것 만으로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새로 증명되었다. 즉 Canada를 출국할 때에는 무병이었고 코코스섬까지의 공중수송중에는 완전하게 매개곤충으로부터 방어된 소중에서 6두가 노루의 유행성출혈열(epizootic haemorrhagic disease of deer)의 원인virus항체가 증명되었기 때문에 살처분 되었다. 가축위생연구소에서는 지금까지 호주국으로서 해외질병때문에 수입국의 요청이 있었어도 이를 거부하고 있던 검사도 실시하여 가축의 수출촉진에도 기여하게 되었다.

III. 호주의 동물검역요건

검역용어로 「동물」이라함은 곤충, 어류, 조류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동물을 포함한다. 동물, 동물의 일부, 동물에 유래되는 생산물과 특정한 생산품의 수입은 검역규칙에 따라야 하며 이 규칙에서 정한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을때에만 허가된다. 수입품은 Australia에 도착시에는 이 규칙에 따라서 검사와 조치를 받는다. 수입을 하

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상세한 내용이라든가, 검역규칙의 개정, 검역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선적전에 수입선의 각주의 주임검역관에 별기사항을 문의하여야 한다.

수입자의 주의사항

○ Australia에 불법으로 반입이 되고, 신고되지 않는 동물과 물품은 보상없이 폐기처분된다.

○ 규칙을 위반하여 반입되고 또한 수입이 허가되지 않는 동물과 물품으로서 신고된 물품은 재수출이 허가되든가 또는 폐기처분된다.

○ 사적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우편물로서 수입되는 감염물에도 같은 검역조치가 취해진다.

○ 동물 및 물품의 수입을 위한 검역수수료는 규칙에 따라서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 검역해방전에 지불한다.

A) 산동물의 수입

모든 동물의 수입을 위해서는 특정의 가축위생조건 및 증명서가 필요하다. Australia에 도착시 모든 수입동물은 검역소에서 검사를 받는다. 수입동물에 적용되는 조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수입동물의 적용조건

꿀벌

꿀벌은 New zealand에서는 직접 수입을 할 수 있다. 수입할때에는 수입선 주의 주임검역관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꿀벌은 Sydney검역소에서 필요한 검역조치가 취해진다. 상기이외의 국가로부터 수입이 되는 여왕벌은 후생대신의 허가하에 수입을 할 수가 있다.

조류(종란을 포함)

모든 조류와 종란은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소

New zealand, Ireland공화국, 서Europe, 미국, 캐나다에서는 수입할 수가 있다. 수입조건은 수출국의 질병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New zealand에서 생산이된 소 이외는 Australia에서 일정한 기간의 검역을 마친후에 해방이 된다. 서Europ, Canada 미국에서 수입된 소의 검역은 코코스섬의 검역소에서 실시가 된다.

개와 고양이

영국, Ireland공화국, Hawaii, Fiti, Papua Neguinea, Solomon Island, New Caretonia, Norfolk Island, Vanua Ieve Island, New zealand에서 직접 수입을 할 수가 있다. New zealand에서 수입이 된 것을 제외하고 Australia에 도착시는 일정기간(영국, Ireland공화국의 것은 3개월간, 기타 국가의 것은 9개월간) 검역이 필요하다.

상기이외의 국가에서 수입이 될 때에는 일정한 기간 사육이 되고 당해국에서의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것이 아니고서는 안된다. 이의 수입조건은 수출국의 질병상황에 따라서 각기 다르다.

지렁이

지렁이의 수입은 금지되고 있으나 사전에 허가를 받을 때에는 일정 국가로부터 수입할 수가 있다.

어류

연어과(연어, 송어)를 제외하고 수입을 할 수가 있다. 수입신고는 주의 수산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어느 종류의 수입은 세관 및 주의 규칙에 의하여 금지가 되고 있는 점에 주의를 하여야 한다.

개구리와 양서류

특별한 목적을 가진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산양

New zealand에서만 수입을 할 수가 있다.

Guina pig

New zealand에서만 수입을 할 수가 있다. 실험동물로 사용되는 Guina pig은 특별한 인가를 받으면 타국으로부터도 수입을 할 수 있다.

Hamster

수입금지

말, 당나귀, 노새

New zealand, 영국, Ireland공화국, Canada에서는 직접 수입할 수가 있다. New zealand의 동물을 제외하고 Australia에 도착하면 일정한 기간 내의 검역이 필요하다. 임신된 말은 Newzealand이외의 지역에서는 수입을 할 수가 없다. 이상의 국가 이외에서의 수입되는 동물에

대하여는 일정기간내의 영국, 또는 Canada 에서 사육된 후에만 수입을 할 수 있다. Canada 의 수출은 12월 15일부터 다음해의 4월 15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안된다.

곤충

곤충과 곤충의 기생충은 실험용이든가 가축, 또는 식물의 질병, 잡초, 해충 등의 방제를 목적으로 사용될 때에만 수입할 수 있다.

실험동물

인가가된 연구소, 동물원 등에서 학술상 목적으로만 사용될 때에 수입할 수가 있다.

조개

식용으로서 생조개는 Newzealand에서만 수입을 할 수가 있다. 조개는 각주의 수산당국의 감시하에 있다. 가공된 조개와 자색조개 등에 대하여는 검역을 받지않고 수입을 할 수가 있다.

돼지

Newzealand, Ireland공화국, 북Ireland, Canada에서만 수태지를 직접 수입 할 수가 있다. 모든 수입돼지는 Australia도착시에 일정한 기간내의 검역이 필요하다.

영장류

미국과 황열이 발생하고 있는 남America 을 제외하고는 인가된 동물원, 써커스, 연구소에 가는 것만 수입할 수가 있다.

토끼

영국, Ireland공화국, Newzealand에서 직접 수입할 수가 있다. 모든 수입동물은 Australia 도착시에 일정한 기간내의 검역이 필요하다. 토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주도 있다.

반추류(낙타, 소, 산양, 양, 영양을 포함)

소, 산양, 양 등에 대하여는 전향과 같다. 기타의 반추류는 수입금지.

파충류

인정된 연구소, 동물원, 써커스 때문에 수입하는 것은 허용된다.

양

Newzealand에서만 수입을 할 수가 있다.

야생동물

어느 종류의 야생동물은 등록이 된 써커스 및

동물원에 수입할 수가 있다. 이들 수입 동물은 종생검역하에 두게된다. 모든 야생동물에 관하여는 Washington조약과 관련하여 통관 당국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B) 동물에 유래한 생산품

모든 동물에 유래되는 생산품의 수입에 관하여는 검역당국의 인가가 필요하다. 수입자는 이들 수입이 통관관계 규칙과 주규칙의 적용도 받게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Casing

Canada, Newzealand, 북Ireland, Ireland공화국과 미국에서 수입을 할 수가 있다. 단지 동물의 위는 Newzealand에서만 수입을 할 수가 있다.

동물의 지방

120°C이상에서 30분간의 가열처리를 한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것과 또는 사전에 허가를 받은 것은 수입을 할 수가 있다.

동물사료

어류와 고래를 제외한 동물유래의 사료는 Newzealand에서만 수입을 할 수가 있다.

식물성 사료

식물의 줄기 또는 식물유래의 사료는 Newzealand에서만 수입이 되고 곡류, 겨 등의 사료는 Newzealand, Canada, 미국에서 수입을 할 수가 있다. 기타에 대하여는 사전에 수입허가를 요한다. 수입자는 식물검역 규칙에 대하여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벌집

수입금지.

생물과 생산품

Virus, 미생물, 배양세포 조직, 병리포본 Formon, 혈청, 선축출물(腺抽出物), 항생물질, 효소, Toxsoito, 항독소, 항원, Vaccine를 포함한 생물과 생산품은 그 유래와 사용목적에 따라서 사전허가를 받아서 수입을 할 수가 있다.

조류의 집(巢)

식용의 집을 포함하여 수입금지.

건조혈액

건조된 혈액과 건조된 혈액 albumine은 학술 또는 의학상인 목적으로 사용될 때에만 Newze-

aland와 미국에서 수입을 할 수가 있다. 돼지의 건조혈액과 건조혈액albumine은 수입금지.

꿀

엄격한 조건부로 어느 국가에서는 수입이 가능하다.

Cake류(biscuit 등 포함)

규칙없이 수입가능하다. 우유 또는 알의 함량이 10%이하의 생cakemix는 수입이 가능하다.

Casein

조건부로 수입이 가능하다. 상업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다음에 기재된 Cheese 항에서와 같이 각국에서 수입을 할 수가 있다.

Cheese

Canada, Denmark, Finland, 일본, Newzealand, Norway, Sweden, Ireland공화국, 영국, 미국으로부터 특정의 검역조건부로 수입을 할 수가 있다. 기타국가로 부터의 Cheese는 가공 과정이 인정된때든가 또는 120일간의 검역을 실시 하였을 때에는 수입을 할 수가 있다. 식육 또는 가공식육을 포함한 것과 동물유래의 조직으로 쌓여져 있는 것은 수입이 금지된다.

유제품

우유(분유, 가당연유, 우유albumine을 포함)

Cream, butter, icecream, 유당, Whey는 특별한 검역조건부로 Canada, Denmark, Finland, 일본, Newzealand, Norway, Sweden, Ireland공화국, 영국, 미국에서는 수입을 할 수가 있다. 기타국가에 있어서는 치료 또는 학술상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특별히 수입이 인가된다. 우유를 포함한 조제유아용 식품에 있어서는 선박으로 도착하는 2세이하의 유아 1인당 1킬로까지는 어떠한 나라에서도 수입을 할 수가 있다.

알

알, 란 nuddle, albumine은 어떠한 나라에서도 수입을 할 수가 없다. 밀봉용기에 넣은 조제란과 nuddle은 특별한 검역조건부로 수입을 할 수가 있다.

난용 용기

수입금지.

우모

어떠한 나라에서도 수입을 할 수가 있다. Australia에 도착시 검사를 받고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것이 있다. 피 또는 꿀이 붙은 우모는 도착시에 조치를 받는다.